

의안 번호	1618	【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4. 29.(수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4. 29.(수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2.(화)

2. 제정이유

- 가. 기존의 「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며
- 나.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 육성·지원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, 시행계획 수립 등(안 제3조~제6조)
- 다.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, 구성, 운영 사항(안 제7조~제13조)
- 라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(안 제14조~제18조)
- 마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(안 제19조)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- 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2, 제7조의3, 제7조의5, 제7조의7, 제7조의11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위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근거법규

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협동조합 기본법

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8조(자활기업)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,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